



작동 중인 자동세차기에 협착



주유소에서 세차기 가동 중 세차기 내부에 있는 이물질질을 제거 하던 재해자가 세차기외부 건물과 세차기에 협착되어 사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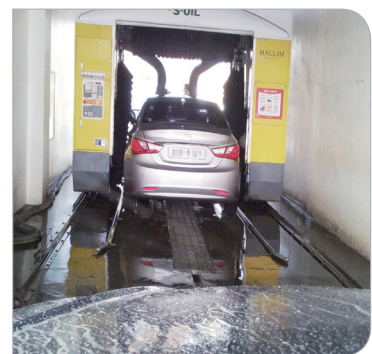
안전작업

TIP

- 1 세차기 가동 시 내부 진입 금지**
 - 세차기 내부 이물질제거 및 가동상태 확인을 위한 작동부 내부 진입 시에는 세차기를 가동중지 후 진입
- 2 세차기 가동 표시장치 설치**
 - 세차기의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(경광등, 경보음)를 설치
- 3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**
 - 재해발생 위험장소(기계의 측면, 앞·뒷면 등)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



세차기 안전보건 표지



세차기 가동 시 내부 진입 금지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(안전·보건표지의 부착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




작동 중인 자동세차기에 협착

설비가동을 정지한 후 청소를 하세요!

